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035
------	------

제출일자 : 2020. 11. 13.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 조례는 가로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노후 건축물의 외관 개선 및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10. 16. ~ 2020. 11. 5.) : 별도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원안동의
- 3) 부패영향평가 : 미대상
- 4) 성별영향평가 : 미대상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8.10.10 조례 제 554호
(일부개정) 2016.03.11 조례 제849호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가로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함에 있어 주민의 자율적인 정비와 개선을 유도하고자 가로환경개선 사업지구내 건축물 외관 개량 및 옥외광고물 등의 디자인 개선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로환경개선 사업"이라 함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외관을 개량하거나 무질서하게 난립한 옥외광고물 등 및 보도블럭·가로등·가로수·안내표지판 등 각종 공공시설물 등을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업을 말한다.
2. "사업지구"라 함은 구의 가로환경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협의체"라 함은 사업지구안의 건축물 소유자 및 임차인 등으로 구성된 주민들의 자치조직인 가로환경개선 주민위원회 등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구 지정) ①구청장은 기성시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신축이 기존상권 유지에 불합리한 지역
2. 가로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주민협의체가 결성되어 행정청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가능한 지역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공람 절차를 거친 후에는 가로환경개선에 대한 기본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지구 지정내용을 게시판 또는 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지구 지정요청) ①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가로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협의체에서 동 지역안의 건축물 소유자 및 임차인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가로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구 지정을 요청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가로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규모
2. 사업지구의 지정목적 및 사업의 시행기간
3.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
4. 주민 및 주민협의체 참여도 분석(주민설명회 개최 등)
5. 총 소요사업비 및 산출내역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

②제1항제5호의 총 소요사업비 및 산출내역에는 건축물 외관의 개량비용과 옥외광고물등의 개선비용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게시판 또는 구보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사업지구안의 주민에게 공람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지원 및 상환방법) ①구청장은 사업지구안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건축물 외관의 개량과 옥외광고물 등의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해 주거나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한도액과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한도액

가. 건축물 외관 총 개량비용의 3분의2 범위안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융자지원

나. 옥외광고물등 개선(디자인 및 제작·설치)비용의 범위안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보조지원

2. 융자조건 : 무이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일은 매분기 말일로 한다. 다만, 4/4분기는 12월 20일로 한다.

④구청장은 융자금 지원을 받은 자가 재해 또는 이와 유사한 사정으로 상환기일내에 융자금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최장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융자지원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위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의 여신 규정에 의한다.

제7조(사업비 지원신청 및 결정)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구안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외관의 개량 또는 옥외광고물 등의 개선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로환경개선 융자(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의한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는 공사비 산출내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축물 : 배치도·입면도·단면도 및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2. 광고물 : 광고물의 종류·재질·규격 및 비용 산출내역서 등

③구청장이 제1항에 의한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로환경개선 융자(보조)금 지원 신청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융자 또는 보조금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과 공사시행 기간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원시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지원액은 건축물 외관에 대한 개량공사를 착수한 후에 지급하며, 보조금 지원액은 옥외광고물 등의 개선을 완료한 후에 지급한다.

제9조(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무

2. 융자금에 대한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

②위탁금융기관은 이 조례 및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특히 융자금이 본래의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위탁금융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사무처리 현황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구청장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자금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위탁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착수신고) ①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환경개선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가로환경개선 착수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가로환경개선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자는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가로환경개선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착수기간 내에 공사 착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7조제3항에 의한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금액 결정사항과 착수신고 내용, 사업 시행기간 등을 위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가로환경개선 공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가로환경개선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행정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완료신고) ①지원대상자가 가로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가로환경개선 완료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서를 접수받은 경우 구청장은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위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①구청장은 용자 또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제7조 제3항에 의한 사업시행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결정 취소사실 등을 위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 취소사실 등을 통보 받은 위탁금융기관은 그 즉시 용자 또는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하며, 지원결정이 취소된 자가 이미 용자 또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제554호, 200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49호, 2016.3.11.>(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3.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